

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취소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이 취소됨을 공고합니다.

2013. 11. 22.

중소기업청장

- 아 래 -

사업자명	창업보육센터명	지정번호	지정취소일	취소사유
한국폴리텍V대학 김제캠퍼스	한국폴리텍V대학 김제캠퍼스 BI	제2002-13호	2013.11.30.	자진반납